채권양도등기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박 종 권**

목차 [

- 1. 서 론
- Ⅱ. 채권양도등기법제화의 내용
- 1. 인적 범위
- 2. 물적 범위
- 3. 장래 집합채권 양도의 등기
- Ⅲ. 채권양도등기법제화에서 채권양도등기의 효력
 - 1.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채무자의 항변
- Ⅳ. 채권양도등기법제화에서 채권양도등기 절차
 - 1. 관할과 사무관장
 - 2. 양도등기와 기재내용
 - 3. 등기신청의 방법
 - 4. 등기정보의 공개
 - 5. 기타 등기의 내용
- V. 결 론

I. 서 론

현대사회는 산업이 발전하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제조업 이외의 산업이 발달하고 기업경영에서의 속도 내지 기동성이 강조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체.

^{*} 본 연구는 2009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IT업체 등은 부동산의 보유 비중은 낮으나 그 밖에 가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었다.1) 현재에는 특별한 자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 등의 담보물이 없더라도 회사의 수익력 내지 장래가치를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 그 수익력 내지 장래가치란 그 기업에게 장래 기대되는 현금의 수입(expected cash flow)인데, 그 중 상당수는 장래채권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본규모에 비하여 수익력이나 장래가치가 큰 기업일수록 그러한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가치 있는 것은 장래채권의 형태를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2)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부합하는 담보제도의 일환으로 채권양도, 특히 장래채권이나 집합채권의 양도가 행해지게 되는데,3) 채권양도를 통하여 기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채권을 유동화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고, 신용사회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유동화의 요청이 높다. 그런데 채권양도의 경우, 현행 민법상 채무자의 통지 또는 승낙을 대항요건으로하고 있어, 불특정 장래의 다수 채권을 일괄하여 양도하거나 채권의 유동화를위한 공시방법으로 부적당하며,4) 지명채권5)에 대한 담보는 그것이 채권질권의방식이건 양도담보의 방식이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공시될 수밖에없는데, 이 방식 또한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와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제3자가

¹⁾ 국회는 2010년 5월 19일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정부가 2010년 6월 10일에 공포하였다(이하 '동산·채권 등의 담보법'이라 함). 이 법률은 담보등기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양도등기제도를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 실제로는 동산이나 채권 등에 담보권을 설정하였는데 양도등기를 하도록 한다면 실체와 등기의 불일치가 발생하므로, 동산이나 채권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의 담보등기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서 채권양도등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²⁾ 윤성근, "한국에서의 동산 및 채권담보 입법방안", 「국제거래법연구」제16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07, 214면.

³⁾ 기업이 재고자산 등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질권설정은 담보권자에게 점유를 이전 하여야 하므로 잘 이용되지 않아 재고자산 등의 담보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양도담보는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이중양도가 발생하는 등 권리자 보호에 문제가 많다.

⁴⁾ 신봉근, "유동집합채권 양도담보의 대항요건에 관한 입법론", 「비교사법」제3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224면.

⁵⁾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채무자를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제2항은 경합하는 양수인간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알기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6)

따라서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입법이 된다면.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등을 활 용한 담보를 활성화 하여 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객관적인 공시로 자금 공급자를 포함한 모든 거래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채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채권양도공 시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채권양도등기'라는 특수한 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만 중점을 두게 되는 경우. 기존 민법 체계와의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민사법제에 대한 부정합은 다른 관련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것이 새로 도입하는 제도자체의 결함으로 작용하여 그 실질적인 가치를 크게 잠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하므로.7) 민법 자체의 개정이라는 방식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법의 제정이라는 방식에 의할 것인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민법의 개 정은 작업이 방대하고, 새로 도입되는 채권양도제도를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 게 되므로, 민법을 수정하여 채권양도등기를 규정하기 보다는 특별법의 제정이 바람직하다. 동산과 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에는 동산양도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8)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 안, 동산 및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9) 지적재산권10)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있다.

이하에서는 채권양도등기를 규율하는 가칭 '채권양도등기법률(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다.

Ⅱ. 채권양도등기법제화의 내용

'채권양도등기법률(안)'은 자금조달시장의 규범으로서 민법 제450조와는 별개

⁶⁾ 김재형, "담보제도의 개혁방안-동산 및 채권담보를 중심으로-", 「저스티스」제106호, 한국법학원, 2008, 657면.

⁷⁾ 윤성근, 앞의 논문(각주 2), 218면.

⁸⁾ 김상용, "동산담보권의 통일화와 등록에 의한 저당권화로의 새로운 경향"「민사법학」제**41**집, 한국민사법학회, **2008**, **393**면.

⁹⁾ 김재형, 앞의 논문(주 7), 662면.

^{10) &#}x27;동산·채권 등의 담보법'의 제5장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의 관점에서 대항요건을 설정하는 것, 즉 민법 제450조의 완화가 아니라, 민법 과는 별도의 규범인 '특별법'으로 제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이 본래 상정 하고 있었던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민법 제450조의 적용을 받는다.

채권양도제도의 개혁은 채권양도에 관한 새로운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¹¹⁾ 채권질이나 채권양도에 관한 공시방법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지만, 그와 같은 공시방법에서 벗어나 채권양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¹²⁾이라는 새로운 공시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다. 등기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법원이 부동산 및 상업등기사무 등 권리관계 공시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등기제도로 함이적당하다.

채권양도등기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무상의 편익이다. 실제 거래에서 담보목적의 양도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양도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¹³⁾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기관으로서는 진정한 양도인지, 담보목적의 양도인지를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양도의목적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달라진다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 양도등기제도를 채택하면 자산유동화를 위해서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정양도의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할 수

¹¹⁾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에서는 담보거래에 관하여 등록제도(filing system)를 채택하였다.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든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든 금융명세서(financial statement)를 등록할 수 있다. 유럽 부흥은행(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B)의 동산담보에 관한 모범법(EBRD Model Law on Securde Transactions)에서도 동산이나 채권담보에 관한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뉴질랜드 등 보통법 국가에서도 미국의 통일 상법전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동산양도나 채권양도에 관한 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TRAL)의 제6작업그룹(Working Group VI)에서 작성하고 있는 담보거래법초안에서도 등기제도를 채택할 것을 전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¹²⁾ 김재형,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안-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한 시론-",「민법론Ⅲ」, 박영사, 2007, 289면은 현재의 정보기술로 통합검색이 가능하므로 밀접한 관련기관에서 등록제도로 함이 좋다고 한다.

¹³⁾ 윤부찬, "자산유동화와 진정한 매매의 법리"「비교사법」제14권 제3호(하), 2007, 1045면은 채권 의 양도가 매매인지 다른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담보의 제공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계약이나 거래의 내용 및 거래의 전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일반화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며, 논의되는 주요한 요소로는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매매가격, 잉여 수익 및 부담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매도인이 환수보증(recourse)을 하였는지 여부, 가격 등 자산의 양도 조건에 대한 변경권을 누가 가지는지 등에 의해 판단된다고 한다.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자산유동화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제 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¹⁴⁾

일본에서는 독립된 특별법¹⁵⁾으로 채권양도를 등기에 의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¹⁶⁾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미국의 통일상법전상 금융등록증서¹⁷⁾에 의한 채권양도의 등록제도¹⁸⁾이다.

¹⁴⁾ 김재형, 앞의 논문(주 7), 664-665면은 동산 및 채권담보와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체계적 정합성, 공시의 명확성, 법의 통일성을 들어 양도등기제도보다는 담보등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바람직하고, 채권양도등기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한 후에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한다.

^{15) 1998}년 처음 제정될 때의 법명은「債權讓渡の對抗要件に關する民法の特例等に關する法律」(이하 '구특례법'이라 한다)이었으나 2004년「動産及び債權の讓渡の對抗要件に關する民法の特例等に關する法律」(이하 '특례법'이라 한다)로 개정되었다. 池田眞朗, "動産債權讓渡特例法の制定の經緯と概要",銀行法務 21, No. 642, 2005, 2, 3頁; 윤부찬, "동산양도등록제도의 도입필요성"「비교사법」제12권 제3호,한국비교사법학회,2005.9,427면; 곽인희·고준석, "동산담보권의 등록열람"「비교사법」제11권 제4호(상),한국비교사법학회,2004.12,208면은 개정된 특례법은 채권양도등기제도 이외에 동산등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동산양도담보방식에서 문제시되던 점유개정이라는 불안정한 공시수단을 동산양도등기라는 명확한 공시방법을 통하여 금융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한다.

¹⁶⁾ 일본의 채권양도의 공시방법에 관한 일본의 법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은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일본민법 제467조) 및「特定債權等に係する事業の規制に關する法律」(1992년에 제정되었고,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다. 이하 '특정채권법'이라 한다)이다. 우리나라와 구별되는 법률은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특례법'이다. 일본은 민법 및 특별법인 양자의 효력에 제도적으로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는 세 가지 법률 가운데 어느 법률에 의한 대항요건을 구비할 것인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 때 이중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특정채권법'상 대항요건인 공고, '특례법'상 채권양도등기 및 민법상 대항요건이 경합하는 경우 공고시점, 등기시점 및 민법상 대항요건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따라 우열을 가리게 된다. '특정채권법'과 '특례법'이 민법상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민법은 양도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양 특별법은 법인에만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별법간의 차이는 첫째, '특정채권법'에서는 특정목적회사라는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특례법'에서는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공시방법에서 '특정채권법'이 대항요건으로서 공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례법'에서는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¹⁷⁾ 금융거래정보를 통합적으로 기재하는 증서로서 채무관계 및 채무자에 대한 정보·담보·근저당 등 과 관련된 정보를 기입하여 Filling Office에 제출하는 문서이며, 등록사항은 제3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¹⁸⁾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제9편에서 금융거래증서(Financing statement)를 등록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양도는 주지사의 사무소와 양도인(채무자)이 거주하는 지방의 사무소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록제도는 등록의 선후에 따라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관계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3채무자 보호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본래의 채권자인 양도인에게 변제하면 면책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 인적 범위

채권양도등기의 양도인은 법인¹⁹⁾으로 한정하는 방법과 자연인까지 포함하는 방법이 있다. 양도인의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채권양도등기를 통한 기업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주로 법인기업에 해당하고, 법인은 그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더라도 전산화된 법인등기부를 통하여 변경 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수 있으며, 일반인들이 법인등기부의 열람을 통하여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향후 '채권양도등기법률(안)'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자연인의 채권양도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양도인을 법인에만 국한시킨다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산유동화법률을 개정하여 동법률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²¹⁾ 그런데 자산유동화법률은 자산유동화 과정을 규제하기위한 규제법이라기보다는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장법으로서, 민법상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²²⁾를 인정함으로써 유동화절차를 일반법에의한 것보다 대폭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존재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문제점이 있다. 즉, 채권양도의 통지를 채권의 양수인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권의 양수인이 통지를 못하도록 한 민법이론상 문제가 있고, 주소불명의 경

¹⁹⁾ 荒木新五,「新し、保證制度と動産・債權讓渡登記制度」, 日本法令, 2005, 146頁은 양도인은 법인에 한정되는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조합 등의 단체에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채권양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²⁰⁾ 資産流動化實務研究會, 流動化の法律と實務-債權讓渡特例法とSPC法, 新日本法規, 1998, 33頁은 일본에서 양도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한 것은 특례법이 주로 다수의 채권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채권유동화를 염두에 두고, 이 때 대항요건구비의 비용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것에 비추어 볼때 채권유동화를 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법인이고, 개인의 채권에 대하여는 개인적 신뢰관계에 기초를 두는 것이 많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식을 기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²¹⁾ 이로문, "채권양도의 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적 고찰", 「한양법학」제23집, 한양법학회, 2008.6, 342면.

²²⁾ 윤부찬, "자산유동화제도에 관한 고찰", 「부동산법학」, 제6권 제6호, 2000.5, 134면은 특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동법은 민법상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한 통지 대신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채권양도사실을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의 특례로서 대량·다수 채권양도시 발생하는 절차의 번잡을 회피하기 위해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우 신문의 공고로 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은 채무자가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과 유동화자산의 대상이 동산인 경우의 공시방법에 관해서는 동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²³⁾

또한 채권양도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만 자연인을 배제 하는 것은 부당하며, 입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고, 법인 아닌 단체나 개인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채권양도등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 것은 불합리한 과잉규제이다. 개인의 경우에도 인적 편성주의에 따라 공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 EBRD의 모범담보법이나 UNCITRAL의 '국제거래에서의 채권양도에 관한 협약'과 '담보거래에 관한 지침 초안'에서도 인적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24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공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수 있고, 채권양도등기부를 따로 편철한다면 법인등기부와 함께 관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기업(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도 채권양도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물적 범위

1) 채권양도등기의 대상과 목적

기업이 채권양도에 의한 자금조달을 도모하는 경우는 신용카드대금채권, 소액의 물품대금채권, 리스료채권 등 금전채권이 대부분이다. 물건의 인도청구권이나 채무자의 행위를 청구하는 청구권 등 비금전채권은 채권의 내용이 개성적이므로, 채무자가 인식하지 않는 사이에 양도등기를 통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게 하는 채권양도등기제도의 기본구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

²³⁾ 김인유, "UNCITRAL의 담보부거래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제35집, 한국민사법학회, 2007, 269면.

²⁴⁾ 김재형, 앞의 논문(주 7), 667면.

에 채권양도등기의 대상을 금전채권으로 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특례법'이 채권을 이용한 금융의 원활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가능한 채권을 지명채권 중 금전의 지불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을 금전채권 일반으로 하고 있다.25)

채권양도등기의 대상은 금전채권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비금전채권도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담보목적물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민법에서도 금전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담보제공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권리질권에 관한 규정에서 지명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무기명채권 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또한 비금전채권도 채무불이행의경우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되는데, 담보목적물을 금전채권에 한정하더라도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목적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금전채권을 담보목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지적소유권을 담보목적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달리 입법기술상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26)

한편 채권양도등기 대상을 진정한 양도를 제외한 담보목적의 양도로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는 채권양도의 목적을 담보목적의 양도로 제한하자는 의견²⁷⁾이 있지만, '동산·채권등의 담보법'은 채권의 담보등기를 규정하므로, '채권양도등 기법률(안)'은 채권양도등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된다.

2) 채권양도금지 특약

채무자가 불특정인 장래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계약 시에 채권양 도금지특약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량채권의 양도에 서 채권양도 금지특약 여부에 대한 조사비용이 크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대

²⁵⁾ 일본은 금전채권을 주택론채권, 소비자론채권, 기타 대부채권, 매매대금채권, 할부판매대금채권, 운송료채권, 리스채권, 크레디트채권, 부동산임료채권, 기타 임료채권, 진료보수채권, 기타 보수채권, 입주보증금채권, 공사대금채권, 기타 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일본법무성 "債權讓渡登記制度について" http://www.moj.go.jp/MINJI/minji13.html(2009년 8월 28일 방문)).

²⁶⁾ 김재형, 앞의 논문(주 7), 670면.

²⁷⁾ 김재형, 앞의 논문(주 7), 665면은 채권담보등기제도를 입법하자고 제안한다.

항요건으로 채무자에 대한 개별 통지를 유지하면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제 449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문제된다.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통상의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다만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악의 내지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중하여야 한다.28)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등기방법에 의하여 양도되는 채권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29)

유엔국제채권양도협약에서는 양도금지특약의 대외적 효력, 예컨대 채권양수인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양도를 활성화함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양도금지특약을 배제하고 있다.30) 또한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를 할 수 있는 거래를 나열하고, 당해 채권들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가 특약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한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채무자 역시 상계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양도금지특약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31)

²⁸⁾ 대판 1999.2.12, 98다49937; 대판 2003.1.24, 2000다5336.

²⁹⁾ 김성균, "금융제공수단으로서의 동산·채권양도등기제도에 관한 고찰",「상사판례연구」제19집 제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6, 293면.

³⁰⁾ 협약 제9조(양도에 대한 계약상의 제한) 1. 최초의 양도인 또는 후속 양도인과 채무자 또는 후속 양수인간의 양도인의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양도는 유효하다. 2. 이 조의 규정은 양도인이 그러한 합의를 위반한 데 따른 의무 또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의 상대방은 그 위반만을 이유로 하여 원계약 또는 양도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그러한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그러한 합의를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는 다음과 같은 채권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a) 물품의 공급 또는 리스, 금융용역을 제외한 용역, 건설 또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리스를 위한 원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b)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 또는 재산적 정보의 매매, 리스 또는 라이센스를 위한 원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c) 신용카드거래로 인한 지급의무를 표시하는 채권 (d) 셋 이상의 당사자에 관련된 네팅계약에 따라 만기가 된 지급을 순결제한 뒤의 양도인의 채권.

따라서 민법 제449조 제2항 채권양도금지특약은 이중양도에 따른 채무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이를 조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권양도등기법률(안)'에서는 민법 제449조 제2항의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장래·집합채권 양도의 등기

담보권의 설정과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담보권설정 이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채무32)를 담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장래채무 발생시 매번 담보권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면 실거래에서는 매우 번거롭게 될 것이다.33) 그리고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은 양도의 시점에 현존하는 것은 물론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장래의 채권도 일정한 조건하에 양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즉, 조건부이든 가정적이든 양도인과 채무자간에 원 계약의체결시점에서 양도가능한 채권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된다.34)

³¹⁾ 법무부,「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일본 민법(채권편)개정검토위원회 편, 2009. 11, 380-381 면은 현행 일본 민법 제466조 제2항을 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이더라도 양도당사자 사이·제3자에 대한 경우·채무자에 대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유효하며,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특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그치고, 채권자·채무자간에 있어서 채권을 양도하지 않는취지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특약에 관하여 악의의 채권양수인과의 사이의 양도효력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고 한다.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은① 채권자 및 채무자가 특약에 의하여 채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를 정하고라도 당해특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양도의 효력은 방해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는 이 특약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①의특약으로 할 수 없다.(가) 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 양도를 승인한 때(나)양수인이①의 특약에 관하여 선의이고,동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다)제3자 대항요건이구비되어 있는 경우로 양도인에 관하여 도산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③ ①의 특약이 있는채권이 압류된 때에는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①의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³²⁾ 정준영, "개인파산(회생)에 있어서 장래소득에 대한 전부명령, 채권양도의 효력", 「민사소송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제8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4, 239면은 개인파산의 경우, 장래소득에 대한 양도·전부의 효력을 관철시키면, 파산법의 이념이 훼손되고 파산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파산 후 장래소득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³³⁾ 김인유, "UNCITRAL의 담보부거래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제35집, 한국민사법학회, 2007, 269면.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장래채권의 양도적격에 관하여, 특정가능성과 발생개 연성을 요구하고 있으나,35) 일정한 방법으로 양도대상 채권을 특정할 수 있고,36) 이를 등기하면 유효하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실체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37) 다만, 채무자가 특정38)하지 아니한 장래채권이 채권양도등기의 대상이 되려면 채무자 이외에 채권의 종류·발생원인·발생연월일·채권의 시기 및 종기 등의 기준에 의하여 양도대상 채권을 특정함으로써 그 채권을 양도인이 갖고 있는 다른 채권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인이 장래 취득하는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등기를 할 수 없다.39)

그리고 장래채권을 포함한 집합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채권에 관련된 채무자의 명칭, 주소,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발생기간, 채권양도금액 등을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양도의 목적인 채권을 특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

³⁴⁾ 박훤일, "채권양도에 의한 금융의 법적 고찰"「국제법무연구」제3권 제1호, 경희대학교국제법무 대학원, 1999, 56면.

³⁵⁾ 대판 1991.6.25, 88다카6358; 대판 2005.5.12, 2004다18439.

³⁶⁾ 김재형, 앞의 논문(주 7), 670면.

³⁷⁾ 법무부, 앞의「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79면에서 일본은 장래의 차임채권이 양도된 후에 임대부동산이 양도된 경우나 장래 채권양도의 양도인이 도산한 경우, 임대부동산의 양수인하에서 새롭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임채권이나 관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장래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임대부동산의 양수인이나 관재인이 제3자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장래채권에 관한 관련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고 한다. 1. 발생할 채권(이하 장래채권이라고 한다)도 양도할 수 있으며,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다. 2. 장래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후 당해 장래채권을 발생시키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³⁸⁾ 일본은 채권등기시 각 채권마다 특정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데 채권을 크게 채무자특정채권 및 채무자불특정채권으로 나눈 이후 채무자특정채권을 다시 기발생채권, 혼재형채권, 장래채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日本法務省"債權讓渡登記制度について" http://www.moj.go.jp/MINJI/minji13.html(2009년 8월 28일 방문).

³⁹⁾ 中田裕康,「債權總論」, 岩波書店, 2008, 524-525면은 현재 및 장래의 다수의 채권을 담보로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특정성이 문제된다(담보채권의 특정성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을 주의). 채권양도의 태양에 의해 첫째, 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본계약형'으로서, 양도의 목적인 채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양도채권액 등'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고, '장래의 일정기간 내에 발생하거나, 변제기가 도래할 기회가 있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에 의해 위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명확하게 하는 등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래채권을 양도하는 예약을 하고, 양수인에게 예약완결권을 부여하는 '예약형'으로서, 채권양도의 예약에서는 예약완결시에 양도의 목적과 실현될 채권을 양도인이 가지는 다른 채권으로부터 식별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면 족하다고 한다.

자가 불특정인 장래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와 같이 채무자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40) 채권의 발생원인 외에 원채권자 정보로써 특정한다. 즉 채권의 발생원인 및 채권발생시의 채권자의 수, 성명 및 주소를 특정한다. 예를 들어 임대건물에서 생기는 임료채권의 양도를 받는 경우,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는 장래채권과 채무자가 불특정인 장래채권을 양수하게 된다. 채권양도 당시 이미 존재하는 임차인에 관한 임료는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만, 장래 임차인이 바뀌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채권양도등기의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의 성명·상호 등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나, 채무자가 불특정인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한편 장래에 취득할 신용카드대금채권 등 장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대법원 판결41)은 장래의 채권은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할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장래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고,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거래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장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42) 따라서 바람직한 것은 대법원이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기준을 바꾸어 그 인정범위를 넓히거나 아니면 민법을 개정하여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43) 이와 달리특별법에서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43) 이와 달리특별법에서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43) 이와 달리특별법에서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지만, 채권양도등기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장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44)

⁴⁰⁾ 일본은 '구특례법'에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었던(구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호 참조) '양도인에 관한 채권의 채무자'를 삭제하고 등기사항 전부를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도 등기의 대상이 되도록 반영하였고, 채권양도 관련 조항은 법인이 채무자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장래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⁴¹⁾ 대판 1991.6.25, 88다카6358; 대판 1996.7.30, 95다7932; 대판 1997.7.25, 95다21624; 대판 2005.5.12, 2004다18439.

^{42) &#}x27;동산·채권 등의 담보법' 제34조 제2항은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발생연월일을 정하 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⁴³⁾ 김재형, "유엔채권양도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문제", 「국제거래법연구」제15집 제1호, 국제거래법 학회, 2006, 344면.

Ⅲ. 채권양도등기법제화에서 채권양도등기의 효력

채권양도의 제도적 완결성은 양도인과 양수인, 채무자, 제3자 사이에 양도된 채권의 유효성을 담보하여 거래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 45) 그런데 지명채권담보의 공시방법인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은 46)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알기 어려운 방법이므로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판단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권리를 공시함으로써 제3자가 불측의 손해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47)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명채권담보 공시방법인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의 요건은 현실거래계에서 이용의 욕구 및 필요성이 높은 '제3채무자가 불특정 다수인 유동집합채권'을 일괄하여 담보에 제공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48) 따라서 채권양도등기를 한 경우에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문언이 불분명하고 항변의 절단시기와 관련하여 보완규정이 필요하므로 채권양도등기를 할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9)

민법은 채권양도통지의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다(제450조). 이에 대

⁴⁴⁾ 김재형, 앞의 논문(주 7), 670면.

⁴⁵⁾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205면 이하;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8, 932면 이하.

⁴⁶⁾ 서봉석,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과 내용에 대한 고찰", 「영산법률논총」제2권 제1호,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2005, 329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승낙은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 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함을 가리키며,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 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⁴⁷⁾ 김재형,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초안 논의", 「비교사법」제13권 제4호, 한국 비교사법학회, 2006.12, 77면.

⁴⁸⁾ 고준석, "한국 인적재산담보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평론", 「법학연구」제23권 제3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07-108면.

^{49) &#}x27;동산·채권 등의 담보법' 제35(담보등기의 효력)는 '①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서는 민법을 개정하여 양수인도 채권양도의 통지권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⁵⁰⁾가 제기되는데, 양도등기를 하는 경우, 허위의 내용을 통지할 가능성이 낮고,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는 이익은 주로 양수인에게 있으므로, 양수인도 양도등기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대량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시간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채권양도등기법(안)'의 제정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절차 등의 간편·효율성 확보와 관련하여 '채권양도등기법률(안)'은 채권의 양도내지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51)

민법상 제3자⁵²⁾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2항)은⁵³⁾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나 승낙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양도등기법(안)'에 의하여 채권양도의 등기가 경료되면 당해 채권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50조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일본 '특례법'에서는 채권양도등기가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특례법 제2조 제1항).54) 따라서 법인이 채권

⁵⁰⁾ 서민, 「채권양도에 관한 연구」, 경문사, 1985, 115면 이하;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 박영사, 1999, 581면(이상훈 집필).

⁵¹⁾ 김성균, 앞의 논문(각주 30), 297면.

⁵²⁾ 제3자란 양도된 채권에 관해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또는 양도된 채권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만을 말한다(통설).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이중으로 양수한 자, 채권의 질권자, 채권을 압류·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채권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450조 2항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제3자는 제450조 1항의 기타의 제3자에 해당된다.

⁵³⁾ 김재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인권과 정의」제29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1, 448면 이하에서는 자산유동화법에서 민법상의 공시방법 이외에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이라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두 개의 공시가 병존할 수 있으므로이중양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예컨대, 저당권이나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을 하였는데도 다시 이 채권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수 있기 때문이다.

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채권양도등기화일에 양도 내지 질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채무자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일본민법 제467조(우리민법 제450조에 해당)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부 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경우 당해 등기상의 일자로서 확정일자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특례법'제4조 제1항). 즉, 양도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55) 따라서 등기에 대해 민법상 채권양도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양도등기는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민법상 대항요건의 특례일 뿐이고, 민법상 대항요건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채권이 이중양도되고, 그 중 하나의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양도등기가 다른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민법 제450조에 따른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등기된 시점과 통지가 도달된 시점의시간적 선후에 따라 가려진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등기시점 이전에 다른 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구비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채권거래의 안전성을 해하기 때문에 취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단 양도등기된 채권에 대하여 등기의 방식에 의한 재양도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원활한 채권거래 내지 채권을 이용한 금융제공에 역행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채권 관련 등기행위를 절대적인 대항력 취득방법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양도 당사자는 확정일자증서나 등기의 어느 것이나 선택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들 공시방법은 상호간에 우열관계가 없으므로,56)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증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등기를 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가능하다.57)

이와 같이 채권양도등기를 한 경우에도 선행하는 확정일자증서에 의한 통지

⁵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등기를 규정할 뿐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민법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⁵⁵⁾ 揖斐潔, "債權讓渡の對抗要件に關する民法の特例等に關する法律の概要-主として實體法部分について-",「登記研究」609号, 1998, 10, 76頁.

⁵⁶⁾ 荒木新五,「新しぃ保證制度と동산・債權讓渡登記制度」, 日本法令, 2007, 172頁.

⁵⁷⁾ 윤부찬, "동산양도 등록제도의 도입필요성", 「비교사법」제12권 제3호, 2005.9, 432면.

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며, 확정일자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고 이후 양도등 기가 행해진 경우에도 등기가 우선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등기를 한 경우, 민법상 대항요건에 비해서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58) 그 결과 채권양도특례법에 따른 양도등기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제3자와의 우선관계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민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59)가 있는 경우 당해 우선관계는 등기시점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의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60) 또한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등기와의 우선순위는 압류결정문 도달시 및 등기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61)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채무자의 항변

민법상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이중변제의 위험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통지 또는 승낙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⁶²⁾ 등기제도는 채권자의 금융 원활화를 위한 제도이므로 채권양도등기가 채무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한

⁵⁸⁾ 변우주, "새로운 담보제도로서의 채권양도등기제도", 「법학논고」제29집, 경북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12, 267면.

⁵⁹⁾ 近江辛治,「民法講義IV(債權總論)」,成文堂, 2009, 288頁은 통상의 집합채권 양도담보에서 제3채 무자는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임대빌라를 건축하기 전에 이로부터 장래에 발생 할 임료채권을 담보로 하여 건축자금을 획득하는 경우나, 리스채권과 같이 제3채무자가 다수 존 재하는 집합채권을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등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대 항요건 구비)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⁶⁰⁾ 법무부, 앞의「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81면은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하여 일본 민법 제467조와, '특례법' 제4조를 '① 금전채권의 양도는 이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비금전채권의 양도는 그 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개정하려고 한다.

⁶¹⁾ 채권양도등기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사이에 양도인의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 채권양수인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의 변제금원 상당액을 칭구할 수 있을 것이다.

⁶²⁾ 대판 2008.9.11, 2008다38400 판결은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된다고 한다.

점에서 채권양도등기법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양도대상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통지를 하거나 당해 채무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63) 즉,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등기가 됨과 동시에 갖추어지지만, 채무자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통지에 준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교부통지행위 내지 승낙이 있어야 제3자에 대하여 대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위에서 규정하는 통지 내지 승낙을 받을 때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등기의 여부에 불구하고채권양도등기법상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다.64)

다만, 대항요건이 경합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증명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의 구비서류로서 채권양도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양수인의 우열을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 판단에 따라 우선하는 양수인에게 변제할 수 있다.65) 따라서 그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채무자는 면책될수 있다.66)

⁶³⁾ 최두진, "채권양도와 집행관계경합의 공탁"「기업법연구」제20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06, 408면은 채권양도의 효력이 의문시되어 공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효력이 의문시 되는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져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 후 다시 채권양도를 철회한다는 의사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철회에 채권양수인이 동의하였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⁶⁴⁾ 법무부, 앞의「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82면은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요건에 관하여 일본의 현행 민법 제467조와 '특례법' 제4조를 '① (가) 금전채권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권양도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나) 비금전채권의 양도인이 확정일자있는 양도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채권의 양수인은 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라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양수인 이외에 대한 양도에 관하여 ①의 통지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개정하려고 한다.

⁶⁵⁾ 법무부, 앞의「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82면은 일본 민법 485조를 신설하여 채권양도에 의하여 증가한 이행의 비용에 관하여 '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증가한 이행의 비용을 채권의 양도 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개정하려고 한다.

또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법 중 중요한 것은 채권양도에 있어 양도된 채권이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유에 대하여 양수인 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67) 이러한 채무자보호의 문제는 제3자의 보호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제3자 보호의 문제는 선의의 채무자만을 보호하는 국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제3자의 보호 문제가 거론되는 대항요건주의라 하더라도 채무자보호와 제3자의 보호가 동일선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양도의 경우처럼 제3자(제1양수인)와 제3자(제2양수인)가 있을 경우 우열을 가릴 때에 문제가 될 뿐이다.68)

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사유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체에 관한 것에 한한 다.69) 따라서 채권의 불성립·무효·취소의 항변은 채권양도를 원시적 불능으로 만들기 때문에 항변사유가 된다. 채권양도의 객체가 되는 채권이 해제·해지70) 등으로 소멸되었거나, 급부불능 등 위험부담법리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항변 역시 채권양도의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항변사유가 된다.71) 변제, 대물변제, 공탁 등의 항변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채권양도의 효력발생시에 채무자의 채권자가 양수인으로 주체가 변경되어 양도인에 있었던 항변사유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

⁶⁶⁾ 이로문, 앞의 논문(각주 22), 346면.

⁶⁷⁾ 법무부, 앞의「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84면은 일본 현행 민법 468조를 '① 채권이 양도 된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요건을 갖출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채무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①의 항변을 포기할 수 없다. ③ 채무자는 ②의 서면이 없는 경우에도 양수인에 대하여 변제함으로써 ①의 항면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①의 항면을 포기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변제 기타의 채무소멸행위를 한 경우,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건넨 것이 있는 때에는 그것을 회복하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개정하려고 한다.

⁶⁸⁾ 박홍래, "채권양도에 있어 '채권의 동일성", 「법률행정논총」제22집 제1호, 전남대학교법률행정 연구소, 2002, 109면.

⁶⁹⁾ 대판 2003.4.11, 2002다59481.

⁷⁰⁾ 대판 2003.1.24, 2000다22850 판결은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검토는 정태륜, "독일에서의 채권양도에 있어서의부당이득의 삼각관계론"「법학논집」제12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163면 이하참조.

⁷¹⁾ 伊藤眞, 「民法Ⅱ」, 弘文堂, 2004, 277頁.

는지 문제되며, 상계항변의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72) 상계항변이 실체법과 절차법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이유는 간이한 변제수단과 담보적 기능이외에 공평유지라는 상계의 기능에 있다면,73) 채무자의 상계는 보호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계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하는 등 상계적상이 지켜져야 하지만, 채권양도의 통지시점에 채무자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이미 상계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변제기가도래한 시점의 상계채권과 대등하게 처리하여야 한다.74) 그리고 채무자의 상계항변은 중요한 채무자의 보호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입법례75)와 같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채권양도등기법제화에서 채권양도등기 절차

등기부의 편성방법은 보통 연대적 편성주의76), 인적편성주의77), 물적편성주의78)의 세 가지로 나눈다.79)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의 경우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지만,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나 변제기 등이 각양각색이므로, 채권양도 등기제도는 인적편성주의에 따른 양도인별로 양도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⁷²⁾ 星野英一,「民法講座4(債權總論)」, 有斐閣, 1998, 264頁; 伊藤眞,「民法Ⅱ」, 弘文堂, 2004, 130頁.

⁷³⁾ 近江辛治,「債權總論」,成文堂,1996,334頁.

⁷⁴⁾ 최영덕,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상계항변", 「법학연구」제24권 제3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83면.

⁷⁵⁾ 미국의 통일상법전 제9-404조는 "채무자가 어떠한 항변권 또는 청구권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집 행력을 가지고 있는 협의를 이미 달성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수인의 권리는 아래의 각 항의 제 한을 받는다. : (1) 승낙한 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모든 조항 및 당해 계약의 거 래에서 파생하는 손해배상의 어떠한 항변권 또는 청구권의 구속 및 (2) 승낙한 채무자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확인한 양도통지를 수령하기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어떠한 기타의 항변권 또는 청구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⁷⁶⁾ 연대적 편성주의란 등기 신청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등기원인증서 등을 편철·보관하는 것인데, 프랑스의 등기부와 공시부, 미국의 많은 주에서 시행되는 Recording System이 이에 해당한다.

⁷⁷⁾ 인적 편성주의는 개개의 부동산 소유자를 중심으로 1소유자에 1등기부를 두는 것인데, 동명이인 의 경우나 동일인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공시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⁷⁸⁾ 물적 편성주의는 개개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제도인데, 지적 내지 토지대장의 정비가 그 전제요건이 된다.

⁷⁹⁾ 최명구, 「부동산등기법론」, 세창출판사, 2003, 2-3면 참조.

하다. 인적편성주의의 경우 제3자가 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채권의 권리변동관계를 물적편성주의 만큼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80) 한편 인적편성은 담보목적물이 권한 없이 전전 처분되는 경우, 예상매수인 및 예상담보채권자는 현재의 외관상 소유자의 성명에 기하여 열람해 봄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데, 이는 편성체제가 담보권제공자편성이기 때문에 열람으로 직전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권을 나타내 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81) 채권양도등기는 전산처리조직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양도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며,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게 된다.

1. 관할과 사무관장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자산유동화계획과 등록명세서의 등록은 행정적인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채권양도등기 등은 권리관계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금융감독위원회에, 권리관계 공시부분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82) 법원은 권리관계 공시업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인적, 물적조직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시설 및 인원을이용하는 것이 새로운 등기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83)

등기소의 지정은 대외적으로 고시하고, 등기사무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무 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을 등기관으로 지정하여 등기사무를 처리 하도록 해야 한다.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⁸⁰⁾ 손승우, "UNCITRAL 지적재산권 담보 논의와 국내 입법 방향", 「법학논총」제32권 제2호, 단국 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6면.

⁸¹⁾ 곽인희·고준석, 앞의 논문(각주 16), 218면.

⁸²⁾ 윤성근, 앞의 논문(각주 2), 222면.

⁸³⁾ 박훤일, "미국의 부동담보제도", 「비교사법」제10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199-200면에서 정부는 구매대출자금·구매전용카드 제도를 권장하고 있고,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금융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활발히 이용되고 있어서 매출채권양도등록의 취급기관을법원등기소로 하는 것도 무리 없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재 담보공시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결제원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것을 법원등기소로 일원화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84) 통상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교합)처리할 때 고유의 식별번호가 자동적으로 등기부에 기록되는 방식이다.85)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이 모두 허용되므로 두 신청의 선후를 구분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접수'의 정의⁸⁶⁾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⁸⁷⁾ 그런데 전자신청의경우, 신청정보가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송신됨과 동시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면서,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기입절차까지 완료되어 버린다.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서면신청과 전자신청이 있을 경우 양자의 접수시점의 선후를 가릴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긴다.⁸⁸⁾ 따라서 등기신청인이 신청서를

⁸⁴⁾ 전자확인서면제도도 일반서면확인제도와 마찬가지로 등기관의 확인서면(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 2항) 및 공증인의 공증부본(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후단)을 이용한 전자신청제도를 도입함 과 아울러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제출한 전자확인서면에 대한 확인의무를 등기관에게 부여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⁸⁵⁾ 고준석, "인적재산담보권의 등록에 관한 법리", 「민사법학」제39권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 271면은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의 입법지침안은 인적재산과 관련한 담보권을 컴퓨터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등록소에 등록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등록은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행위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등록에 관한 법리의 일반법성). 등록소는 담보권의 주요정보를 기재한 공시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공시서등록편성). 담보공시서는 담보권제공자에 기하여 편성한다(인적편성). 담보권공시서에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련번호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인적편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한다(인적편성의 문제점 보완). 담보권공시서는 컴퓨터인터넷을 통하여 저장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완전전자방식). 인적재산담보권 관련 등록부는 통합하여 한 곳에 두는 것을 권장한다(중앙통합등록부의 방식).

^{86) &#}x27;동산·채권 등의 담보법'은 제45조에서 등기신청의 접수에 대해 '① 등기신청은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를 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⁸⁷⁾ 박광동, "일본의 디지털(Digital)동산양도등기제도에 관한 고찰"「법제연구」제34호, 한국법제연구원, 2008.6.30, 265면은 등기관이 보정을 필요로 하는 등기신청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것이 보정될 때까지 해당 신청보다 늦은 모든 등기신청의 처리를 정지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사태는 동산을 활용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지장을 초래해, 등기제도의 존재의의가 손상되므로 등기신청의 보정을 인정하지 않고, 등기신청은 등기 또는 각하결정이 될 때까지 간격이 있다면, 서면에 의해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⁸⁸⁾ 부동산등기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고(동법 제177조의 10), 부동산등기규칙에서는 등기신청서의 접수는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규칙 제145조의 16).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관한 정보 등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기 전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것이 아니다.⁸⁹⁾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신청은 등기관과 등기신청인 사이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신청인 및 등기신청서 등 제출된 첨부서면의 진정성의 확보가 문제된다.90) 이를 위하여 등기신청인이 전자신청을 위한 대법원사이트접근번호를 부여받으려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현재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인정하고 실질적 심사권은 예외적인 경우(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를 제외하고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등기신청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만으로는 미흡하다. 더욱이 전자 신청시 확인서면제도에 관하여는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제도만인정하고 있고91)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격자대리인의 부담하고 있어서,서면 신청시와 달리 전자 신청시 확인서면의 발급을 등기관이 담당하고 있지않아 이에 대하여 사실상 등기관의 주의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인의 진정성의 확보, 온라인상 제출된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등에 대한 직무상 주의의무의2)를 서면신청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등기신청인의 진정성 확인에 대한

⁸⁹⁾ 박광동,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디지털의사표시",「법학연구」제25집, 한국법학회, 2007, 138-139면은 디지털의사표시에 있어서 발신시기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 효력에 필요한 행위를 마치고 전송을 한 때이며, 수신시기는 일반적으로 통지가 상대방의 지배영역 내로 들어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인정될 것이므로 디지털등기의 신청은 신청의사가 표시된 디지털문서가 등기소의 저장장치에 들어가 이를 등기관이 요지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⁹⁰⁾ 박광동, 앞의 논문(주 89), 273면은 등기내용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등기신청에 있어서의 공동신 청주의에 기반을 둔 당사자신청주의 도입과 디지털동산양도등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필연적으 로 발생되는 디지털문서의 이용에 있어서 문서의 진정성확보를 위한 디지털관인이나 디지털인 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⁹¹⁾ 대판 2006.5.25, 2006다13025 판결은 자격자대리인에 의하여 발급되는 확인서면의 흠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격자대리인에게 있다고 한다.

⁹²⁾ 최명구,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주의의무", 「민사법학」제31집, 한국민사법학회, 2006, 224-225면에서 과실은 첫째,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과실 둘째, 직무행위를 수행할 요건사실의 인정에 대한 과실 셋째, 단순한 빠뜨림 또는 잘못(단순한 과실) 등이 있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등기관의 단순한 과실에 관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첫째와 둘째는 고도의 전문적 주의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요건이 구성되면 과실로 인정함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셋째의 단순한 과실의 경우에는 주로 재판관적 관점에 의존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관련법 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이에 대한 등기관의 주의의무의 실질적 실행근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⁹³⁾

2. 양도등기와 기재내용

채권양도등기를 할 때에 등기부에 기록할 등기사항은 크게 양도인, 양수인, 양도채권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채권양도등기는 양도인이 법인인경우 상사법인이나 민법상 비영리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된 특수법인도 모두 양도등기를 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에 준해서 양도등기를 할 수 있다. 양도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때에는 법인의 상호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양도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때에는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의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자연인에 관해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양도인을 특정할 수 있다. 양수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방법은 양도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방법과 같다.

양도채권을 등기할 때에는 양도대상 채권을 특정하여야 한다.94) 구체적인 특정방법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게 되는데, 채권의 경우 원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연월일, 채권액 등이 특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한편 채권 질권설정등기에도 담보적인 질권의 특성인 피담보채권 액을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장래채권의 양도에서는 채권총액은 예상액에 불과하여 실제 발생 채권액과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양도채권총액을 등기사항으로 할 경우 오히려 이해관계인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

⁹³⁾ 최명구,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주의 의무", 「비교사법」, 제14권 3호 (상),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601-602면.

⁹⁴⁾ 일본의 경우, 기발생채권의 양도는 다음 5가지의 사항에 의해 양도채권을 특정하므로 채무자를 기록하지 않고 채권양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채권이 수개인 때에는 1부터 시작하는 채권의 연속번호(채권통번) ② 채무자 및 채권의 발생시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수, 성명 및 주소(법인은 명칭 및 주소에 대신하여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③ 대부채권, 외상매출채권 기타 채권의 종별 ④ 채권의 발생연월일 ⑤ 채권의 발생시 및 양도시에 있어서의 채권액(기발생채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이는 이미 발생한 채권과 장래채권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채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채권총액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장래채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채권총액을 등기사항으로 하지 아니한다.95) 그 밖의 등기사항으로는 양도등기의 존속기간, 신청서 접수번호, 등기연월일 등이 있다.

3. 둥기신청의 방법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본인 확인에 대하여 본인 출석 에 준하는 정도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산정보처리조 직96)을 이용한 전자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 전에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사용자등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4년 5월 6일부터 온라인신청도 받고 있데 그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97) ① 채권양도등기온라인신청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청서 데이터의 작성, ② 채권양도등기온라인신청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청서 데이터 내지 신청데이터의 통합, 압축, ③ 사전준비에 의하여 취득한 신청자 ID 및 패스워드에의한 법무성 온라인신청 시스템으로의 로그인, ④ 등기신청서 송신표의 취득, ⑤ 위 ②에 의하여 작성된 압축파일을 등기신청서 송신표에 첨부함과 함께 수

⁹⁵⁾ 일본의 경우, 장래채권의 양도는 다음 사항에 의해 양도채권을 특정한다. ① 채권이 수개인 때에는 1부터 시작하는 채권의 연속번호(채권통번) ② 양도에 관계된 채권의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채권발생시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수,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명칭 및 주소에 대신하여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③ 양도에 관계된 채권의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의 발생원인 ④ 대부채권, 외상매출채권 기타 채권의 종별⑤ 채권의 발생연월일.

⁹⁶⁾ 신봉근, "전자정보의 관리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민사법학」제43권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12, 334-335면은 전자정보계약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위탁하는 것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이 나 임치계약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계약으로서, 전자정보계약의 주된 급부의무는 보관의무이고, 선관주의의무로서 유출·도용·변개의 방지의무와 계약종료 후 반환의무가 있는데, 계약 종료 후 전자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의 계약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⁹⁷⁾ 일본법무성 "債權讓渡登記制度について" http://www.moj.go.jp/MINJI/minji13.html(2009년 8월 28일 방문).

수료정보를 입력온라인신청정보를 작성한 후 전자서명, ⑥ 온라인신청정보의 송신, ⑦ 법무성온라인신청시스템은 등기신청서의 형식 및 전자서명을 검증 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⑧ 위 ⑦에 의한 등록과 동시에 신청번호가 기재된 도달확인표 발행, ⑨ 채권양도등기소에서의 등기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⑩ 심사 완료 후 문제가 없는 경우 등기수수료 관련 정보를 온라인신청시스템에 게시함과 동시에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이메일 송부. 취하내지 각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온라인신청시스템에 게시함과 동시에 등기신청인에게 이메일 통지, ⑪ 등기신청인의 수수료 납부, ⑫ 등기완료 후 등기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이다.

4. 등기정보의 공개

채권의 양도에 등기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3자에 대한 제한 없는 공개가 원칙에 부합하고, 신용정보의 정확한 제공이 필요하므로 양도등기부의 기록내용을 제한 없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부동산등기 법 제21조 참조). 그러나 공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시자료는 채권양도인의 영업비밀, 경영전략,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등기관련 정보의 공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채권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특정함이 요구된다. 그리고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시 채무자의 정보가 양수인에게 제공하게 되는 데, 양수인에게 제공되는 채무자의 정보는 채무자의 개인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양도인이 명시적이든 묵시 적이든 채무자의 프라이버시보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98) 채권양도에 따른 채무자의 정보이전시 채무자(이용자)의 동의(신용정보법 제조23조, 정보통신망법 제22조조 제1항)를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느냐의 문제에서 동의존재여부, 동의의 해석, 동의의 유효성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의를 크게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나누면, 명시적 동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정도를 정할 수 있으나, 묵시적 동

⁹⁸⁾ 권헌영,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 「정보화정책」제11권 제3호, 한국정보사회진 흥원, 2004, 65면.

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의 정도에 대한 해석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묵시적 동의의 경우 채무자의 민감정보를 제외한 채권과 직· 간접적인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99)

한편 채권자는 양도인으로서 자신의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스스로 정보제공에 대한 방어적 위치에 있으므로 보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적다. 따라서 채권양도시 개인정보보호문제는 채무자의 보호문제로 귀결되며, 문제와 그 해결책 또한 채무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 정보제공에 따른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보호를 위한 채권유통지장의 행위규범의 정립, 정보제공의 단계화, 채권자의 정보에 대한 구분관리, 사전 채무자의 동의확대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00)

5. 기타 등기의 내용

1) 등기신청인

채권양도등기의 경우, 채무자를 등기신청인으로 하지 않는 것은 채권양도등기의 효력이 양도대상인 채권의 존재를 공시하거나 양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¹⁰¹⁾ 채권양도사실을 등기에 의하여 공시함과 아울러 민법제450조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채권양도에 대항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¹⁰²⁾

⁹⁹⁾ 池田眞朗,「債權讓渡の研究」, 弘文堂, 2006, 76頁 참조.

¹⁰⁰⁾ 최명구, "채권양도와 개인정보보호", 「민사법학」제40권, 2008, 한국민사법학회, 418-419면.

¹⁰¹⁾ 박광동,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디지털(digital)등기신청을 중심으로-"「법제연구」제30호, 한국법제연구원, 2006.6.30, 276면은 부동산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이전 단계에서는 등기의 공신력 확보 또는 대체방안으로서 에스크로우제도나 권원보험제도의 도입, 등기신청 이전단계에서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단독신청주의의 도입, 심사단계에서의 실질적 심사권한을 부여, 등기신청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및 등기관에 의한 본인확인 규정의 도입, 완료단계에서는 등기필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는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102) &#}x27;동산·채권 등의 담보법'은 제42조에서 등기신청의 방법에 대해 '1.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 대법원규칙

2) 질권설정등기・연장등기・말소등기・상호변경 등의 기재내용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함이 아니면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거래의 실정상 금융의 수단으로 채권질을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규정을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의 질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존속기간 연장등기는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연장하는 취지, 연장 후의 존속기간, 접수번호 및 등기연월일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양도등기의 전부말소는 양도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양도행위 후 취소나 해제 등의 사유로 양도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양도채권이 모두 소멸한 경우에 말소등기를 한다. 양도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특정하여야 한다. 법인의 상호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법인에게 변경등기신청을 의무화하면 법인은 법인등기신청과 별도로 양도등기부의 법인의 상호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103)

V. 결 론

채권의 유동화를 위하여 '채권양도등기법률(안)'을 제정함에는 민법, '동산·채 권등의 담보법(안)',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사항과 채무 자의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가 남겨져 있고, 향후 통일적인 제도 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에서는 다 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다고 규정한다.

^{103) &#}x27;동산·채권 등의 담보법'은 제51조 제2항에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된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채권양도의 공시방법으로 '채권양도등기'제도를 창설하되 그 관할은 전국 적 조직과 인적·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관장하도록 한다. ② 채권양 도등기의 인적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채권의 양도인을 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자연인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양도 등기의 대상을 금전채권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물건의 인도청구권 등 비금전채 권도 포함시켜야 하고,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필요하 며,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이라도 채권의 종류·발생원인·발생연월 일, 채권의 시기 및 종기,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양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소액·다수 채권양도, 채무자 불 특정의 장래채권 등, 포괄적 양도의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지 조사하 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민법 제449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시켜야 한다. ⑤ 채권양도등기를 한 경우에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이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⑥ 민법은 채권양도통지의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 정하고 있지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는 이익은 주로 양수인에게 있으 므로, 양수인도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⑦ 민법상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 건은 이중변제의 위험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 권양도의 통지를 받지 않은 동안은 원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으며, 원채권자 에게 변제하면 면책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양도등기법률(안)'에서 온라인을 이용한 등기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인의 진정성의 확보, 온라인상 제출된 등기신청 서 및 첨부서면 등에 대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서면신청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 고, 등기신청인의 진정성 확인에 대한 관련법 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이에 대한 등기관의 주의의무의 실질적 실행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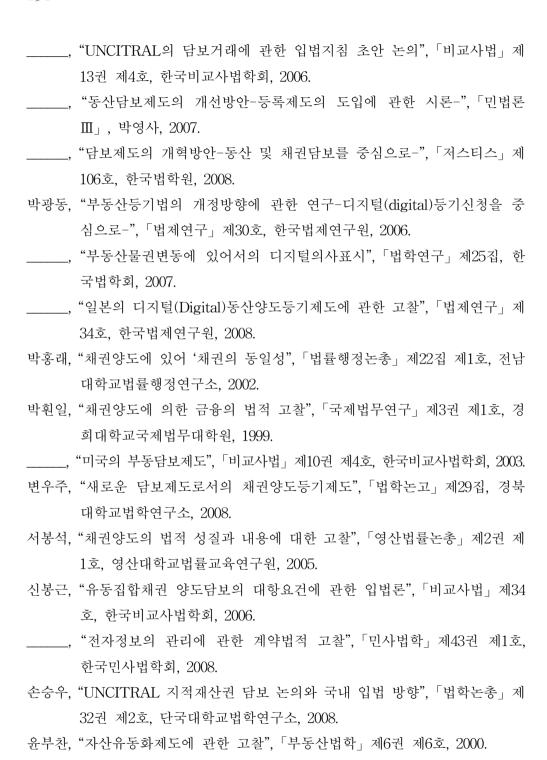
[논문투고일: 2010. 5. 10, 논문심사일: 2010. 6. 7, 게재확정일: 2010. 6. 17]

▶ 주제어 채권양도, 채권양도등기, 자산유동화, 공시제도, 채무자의 동의, 디지털등기, 온라인등기신청, 등기관의 주의의무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 박영사, 1999.
- ____, 「채권총론」, 박영사, 2003.
- 김재형, 「民法論 I」, 박영사, 2004.
- 서 민,「채권양도에 관한 연구」, 경문사, 1985.
-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8.
- 최명구,「부동산등기법론」, 세창출판사, 2003.
- 법무부,「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일본 민법(채권편)개정검토위원회 편, 2009. 11.
- 곽인희·고준석, "동산담보권의 등록열람", 「비교사법」제11권 제4호(상), 한국 비교사법학회, 2004.
- 권헌영,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 「정보화정책」제11권 제3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4.
- 고준석, "인적재산담보권의 등록에 관한 법리", 「민사법학」제39권 제1호, 한국 민사법학회, 2007.
- ______, "한국 인적재산담보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평론",「법학연구」제23권 제 3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 김상용, "동산담보권의 통일화와 등록에 의한 저당권화로의 새로운 경향", 「민 사법학」제41집, 한국민사법학회, 2008.
- 김성균, "금융제공수단으로서의 동산·채권양도등기제도에 관한 고찰",「상사판례연구」제19집 제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6.
- 김인유, "UNCITRAL의 담보부거래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제35집, 한국민 사법학회, 2007.
- 김재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현황과 문제점",「인권과 정의」제29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1.
- ______, "유엔채권양도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문제",「국제거래법연구」제15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6.



. "동산양도 등록제도의 도입필요성",「비교사법」제12권 제3호, 2005.

- ______, "동산양도등록제도의 도입필요성", 「비교사법」제12권 제3호, 한국비교 사법학회, 2005.
- _____, "자산유동화와 진정한 매매의 법리", 「비교사법」제14권 제3호(하), 2007.
- 윤성근, "한국에서의 동산 및 채권담보 입법방안", 「국제거래법연구」제16집 제 2호, 국제거래법학회, 2007.
- 이로문, "채권양도의 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적 고찰",「한양법학」제23집, 한양법학회, 2008.
- 정준영, "개인파산(회생)에 있어서 장래소득에 대한 전부명령, 채권양도의 효력",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제8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4.
- 정태륜, "독일에서의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부당이득의 삼각관계론", 「법학논집」제12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 최명구,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주의의무", 「민사법학」제31집, 한국 민사법학회, 2006.
- _____,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주의 의무", 「비교사법」, 제14권 3호(상),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 _____, "채권양도와 개인정보보호", 「민사법학」제40권, 한국민사법학회, 2008.
- 최영덕,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상계항변", 「법학연구」제24권 제3호, 원 광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국외문헌]

近江辛治、「債權總論」、成文堂、1996、

近江辛治、「民法講義IV(債權總論)」、成文堂、2009.

星野英一,「民法講座4(債權總論)」, 有斐閣, 1998, 264頁; 伊藤眞,「民法Ⅱ」, 弘文堂, 2004.

伊藤眞,「民法Ⅱ」, 弘文堂, 2004.

中田裕康,「債權總論」, 岩波書店, 2008.

池田眞朗、「債權讓渡の研究」、弘文堂、2006.

荒木新五、「新しい保證制度と動産・債權讓渡登記制度」、日本法令、2005.

揖斐潔, "債權讓渡の對抗要件に關する民法の特例等に關する法律の概要-主として實體法部分について-",「登記研究」609号, 1998.



A Study on the Enactment of Registration System in an Assignment of an Obligation

Jong-Kwun Park (Professor, Kvong Gi University College of Law)

Corporations provide mainly real estate as collateral to raise funds, Primary corporate assets consist of not only real estate, but also receivable accounts, equipment and facilities, and stocks of products.

Presently, our country generally regulates the obligation transfer in the civil law and also regulates the requirements for appeal in the way of the public announcement, but there is much limit to revitalize the liquidization of obligation through the regulations of the civil law only. As the requirements for appeal, which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one in the liquidization of obligation, is not simple and efficient, it is actually not easy to smooth the fund procurement through the obligation transfer. For this problem, the discussion to improve the system to make the requirements for appeal of the obligation transfer simple and efficient is being actively proceeded. The liquidization of obligation is executed within the extent extremely limited in the law on liquidization of the assets, but as there is any limit such as strict limit of the owner to liquidize the assets and etc.,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tion objective. Korea's projected law on obligation assignment is as follows. It should establish the actors and the scope of obligation assignment. Since the actors of providing obligations as collateral are chiefly enterprises, some argue that they should be limited to corporations, but since the actors of providing obligations as collateral may not be corporations but individuals, it is appropriate that they should not be limited. It is deemed appropriate that the scope of assignment should include a wide range of assets that can be disclosed, such as obligations, inventor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lectronic obligations. This is because the wider the scope of the objects of collateral is, the better it is, in order to correspond to the system purpose of enabling the parties concerned to raise funds successfully.

The investigative range and methods of the registrar on line are several attention duties of the registrar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on line, the investigation of the all informations and documents applied on line,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the fabricat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nd the conformed electronic documents on line.

Ney words

assignment of an obligation, registration on assignment of an obligation, ABS, asset securitization, obligor's agreement, digital registration, on-line registration application, attention duty of the registrar